

제469차 무역위원회, 태국산 섬유판 등 무역구제조치 3건 심의·의결

- 「태국산 섬유판」에 15.29~22.44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- 「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」에 43.58%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- 「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」에 잠정덤핑방지관세 9.53~19.17% 부과 건의

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이재형)는 2.12일(목)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태국산 섬유판,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,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·의결하였다.

「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」건은 최종판정으로서,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, 향후 5년 동안 15.29~22.44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. 동 제품은 ‘25.11.28일부터 11.92~19.43%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,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.

「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」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으로, 무역위원회는 동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, 향후 5년 동안 43.58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.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원심조치(‘22.9.5.부터 43.58%의 덤핑방지관세부과) 후 덤핑 수입 감소, 국내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으나, 사우디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덤핑방지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
또한, 「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」건은 예비판정으로서, 무역위원회는 동 건의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,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.53~19.17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.
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	책임자	과 장 이민영	(044-203-5850)
		담당자	사무관 박만희	(044-203-5851)
	산업피해조사과	책임자	과 장 류동희	(044-203-5860)
		담당자	사무관 나강운/이정효	(044-203-5864/5866)
			주무관 임예은	(044-203-5865)
	덤핑조사지원과	책임자	과 장 김영운	(044-203-3860)
		담당자	사무관 이선덕/이주혜	(044-203-3865/3864)
			주무관 조성미/안채린	(044-203-3866/3867)



참고1 [최종판정] 태국산 섬유판 (원심)

□ 조사 개요

- (신청인) (주)유니드비티플러스 (대리인: 법무법인 화우)
- (조사대상공급자) 피피엠, 어드밴스 (2개사)
- (조사대상물품) 섬유판(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)

- (정의)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·추출한 후 접착제 등과 혼합하여 가공한 두께 5mm 이하의 판재
- (용도) 가구용, 건축물 내장재, 소품, 포장용 등
- (관세분류) HSK 4411.12.1000 4411.12.9000 4411.92.1000 4411.92.9010 4411.92.9090
4411.93.1000 4411.93.9010 4411.93.9090 4411.94.1000 4411.94.9000
- 기본관세율 8%, 한·아세안 FTA 협정세율 0%, 5%, 6.4%

□ 조사 경과 : 조사신청('25.3.6.) → 조사개시(5.7.) → 예비판정(9.25.) → 공청회(11.20.) → 최종판정('26.2.12.)

□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

공급국	공급자 (수출자, 생산자)	최종덤핑방지관세부과수준
태국	피피엠(Panel Plus MDF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20.24%
	어드밴스(Advance Fiber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5.29%
	그 밖의 공급자	22.44%

* 현재 11.92~19.43%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중 ('25.11.28~'26.3.27.)

□ 향후 계획

- 무역위 결과, 재경부 건의 및 해당 정부·이해관계인에게 통지

참고2 [최종판정]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(1차 재심)

□ 조사 개요

- (요청인) 롯데케미칼(주) (대리인: 법무법인 광장)
- (재심사대상공급자) 사다라 (1개사)
- (재심사대상물품) 부틸글리콜에테르 (Butyl Glycol Ether)

- (범위) 부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를 혼합·반응 후 정제하여 생산한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(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, 약칭 'BG')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(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, 약칭 'BDG'), 트리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(Tr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, 약칭 'BTG')는 제외
- (용도) 도료, 세정제, 감광제, 박리액 등 산업 전반에 사용
- (관세분류) HSK 2909.43.0000
 - 기본관세율 8.0%, WTO 협정세율 5.5%

□ 재심사 경과 : 재심사 요청('25.3.4.) → 재심사 개시(5.16.) → 공청회(11.20.)
→ 최종판정('26.2.12.)

□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최종덤핑방지관세부과수준
사우디아라비아	사다라(Sadara Chemical Company) 및 그 관계사	43.58%
	그 밖의 공급자	

*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(43.58%, '22.9.5.~)

□ 향후 계획

- 무역위 결과, 재경부 건의 및 해당 정부·이해관계인에게 통지

참고3 [예비판정]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(원심)

□ 조사 개요

- (신청인) (주)엘지화학 (대리인: 법무법인 정률, DKC)
- (조사대상공급자) 타이싱 순커, 상해화이, 핑후 페트로 (3개사)
- (조사대상물품) 부틸 아크릴레이트 (Butyl Acrylate)

- (정의) 아크릴산(Acrylic Acid)과 부탄올(Butanol)의 에스테르화 반응(Esterification Reaction)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
 - 분자식 : $\text{CH}_2=\text{CH}-\text{COO}(\text{CH}_2)_3\text{CH}_3$
- (용도) 점·접착제, 아크릴계 도료, 특수 플라스틱(ASA)의 소재
- (관세분류) HSK 2916.12.3000
 - 기본관세율 8%, WTO 협정세율 6.5%, 한-중 FTA 협정세율 0%

□ 조사 경과 : 조사신청('25.7.29.) → 조사개시(9.29.) → 예비판정('26.2.12.)

□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수준
중국	타이싱 순커(Taixing Sunke Chemicals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1.88%
	상해화이(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9.53%
	핑후 페트로(Pinghu Petro Chemic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9.17%
	그 밖의 공급자	19.17%

□ 향후 계획

- 무역위 결과, 재경부 건의 및 해당 정부·이해관계인에게 통지
- 공청회('26.4월 예정) → 최종판정('26.7월 예정)